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산림환경연구원 자체감사 —

2022. 6.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환 급	금액
계		10건	5	5	2	1,610	1	1,090	1	30,905
1	○○○○○ ○○○○○	공사계약 면허 부적정		1						
2	○○○○○	계약보증금 채납관리 부적정	1							
3	○○○○○	숲해설, 유아숲체험 민간위탁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1							
4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1						1	30,905
5	○○○○○	지방정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1		1	720	1	1,090		
6	○○○○○	사방사업 추진 부적정	1		1	890				
7	○○○○○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1						
8	○○○○○	관리사 관리 부적정		1						
9	○○○○○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10	○○○○○ ○○○○○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공사계약 면허 부적정 (주의)	1
2.	계약보증금 체납관리 부적정 (시정)	3
3.	숲해설, 유아숲체험 민간위탁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미 실시 (시정)	5
4.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시정)	7
5.	지방정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9
6.	사방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2
7.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주의)	15
8.	관리사 관리 부적정(주의)	17
9.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18
10.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주의)	2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계약 면허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¹⁾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²⁾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고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공사에정금액³⁾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 계약은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와 체결하여야 했다.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전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여러개의 전문업종이 단순히 복합된 공사를 말함
3) 공사에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금액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2건의 전문공사를 무자격자 또는 정당면허 미소지자와 계약 체결하였다.

[표] 공사계약 면허 부적정 수의계약 내역

- 이하 생략 -

그 결과 정당한 건설업자는 수주기회를 일탈하게 되었고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전문건설공사 2건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시공 되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하는 등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보증금 체납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각종 공사계약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⁴⁾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⁵⁾하도록 되어 있다.

4)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5)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등에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는 그 계약보증금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채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등으로 채납액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9.30. 2021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시공감리용역(□□□□□□) 계약상대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같은 해 11.23. 계약보증금 납부고지를 한 이후 납부독촉이나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회수를 위한 노력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

[표] 계약해지 내역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납부독촉을 통해 채무자가 미납부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납부독촉 후에도 채무자가 계약보증금을 미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등 채납액 회수 절차를 진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숲해설, 유아숲체험 민간위탁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미 실시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초·중학생, 유치원 및 가족단위 일반인을 대상으로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표] 숲해설, 유아숲체험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이하 생략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⁶⁾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⁷⁾ 동안 청소년활동시설⁸⁾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제5항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

6) 19세 미만인 자

7)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이용시설(수목원, 공원 등 유사한 공공용시설)로 규정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숲 등 산림휴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숲해설사 및 유아숲지도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하거나 위탁사업자가 조회한 후 해당 용역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산림환경연구원 부지 내에 조성된 숲에서 유치원, 초·중학생 등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운영하는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을 위탁운영하면서 노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고 있는 숲해설사 및 유아숲지도사 총 30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 조치가 소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 ① 앞으로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하거나 위탁사업자가 조회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2022년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용역참여 결격 여부를 확인토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내 용

○○○○○○○○에서는 AAA에게 지하1층 중 전용공간 217.80㎡(중강의실 2실, 교수실 1실), 공용면적(hall, 휴게실, 화장실, 복도) 336.81㎡를 사용허가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대부료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기준(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한 토지 및 건물의 당해 재산평정가격⁹⁾에 대부요율¹⁰⁾을 반영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 이외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산출

9) 토지 :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주택이외의 재산 : 시가표준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단,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

10) 1,000분의 50이상

하여 결정한 재산평정가격에 대부요율을 반영한 후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건물평정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해당 건물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잘못 부과하였다.

[표] 대부료 산정 부적정 내역

- 이하 생략 -

그 결과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할 행정재산 사용료 30,905천원이 부적정하게 부과·징수되었다.

조치할 사항 사방기술교육센터장은

부적정하게 부과·징수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환급하고 관련 부가세는 수정신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정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표1] 사업현황

- 이하 생략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업무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정산)내역서’와 증빙서류(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도급자가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증빙사진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0천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는데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 현황

- 이하 생략 -

2. 가설도로 자재비 과다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설계서의 누락이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지방정원 보완사업(조경공사)의 가설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파형강관(D1200, L=29.6m) 자재비에 대해 고철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과다 계상된 사업비 1,090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실정 보고 및 감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집행된 사업비 720천원은 회수하고, 계다 계상된 사업비 1,090천원(제경비 포함)은 감액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사방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사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사업현황

- 이하 생략 -

1. 공사기간 연장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실을 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연장 시 확인 내용

1. 태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계약연장 사유가 적절한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토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년도 사방댐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방댐 위치를 설계변경 하면서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7, 8월 장마가 예상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을 50일 연장¹¹⁾한 사실이 있다.

2. 강관비계 준공처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공사현장의 설계가 현장과 달라 불필요한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1) 준공예정일 : 2021. 8.19. 실 준공일 : 2021. 7. 27.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년도 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반영된 암거수로(3.0×2.5)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였고 공사비 890천원(제경비 포함)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과다 집행된 사업비 890천원(제경비 포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사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사업현황

- 이하 생략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산림기술자의 업무,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공자는 사방사업의 공사 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와 동시에 산림공학 기술자 1인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산림토목공사,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행하여지는 5억원 미만인 산림토목공사, 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산림토목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1인의 산림공학기술자를 3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7조에 따르

면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배치된 산림공학기술자가 동시에 다른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5억 이상 산림토목사업의 1인의 산림기술자가 동시에 다른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등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2] 현장대리인 배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 사 명	공사금액	시공사	공사기간	현장대리인
1	△△△△△△△	4,260,000	A	-	C
2	▽▽▽▽▽▽▽	216,464	A	-	C
1	▲▲▲▲▲▲▲	617,235	B	-	D
2	▼▼▼▼▼▼▼	205,734	B	-	D

그 결과 산림기술자의 중복배치로 인해 사업추진 중 즉각적인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장근로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리사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 ○○○○○에서는 관리사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에 따르면 1급 및 2급 관사를 제외한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은 3급 관사로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6조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는 1급·2급 관사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3급 관사(관리사)의 커튼, 블라인드 등 소모품의 경우 사용자가 구입하여야 하고, 예산으로 구입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표] 관리사 경비 집행내역

- 이하 생략 -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 8월부터 2022. 3월까지 3급 관사(관리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사유로 커튼 등의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 등을 기관에서 부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사 관리 및 운영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물품 지급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Ⅲ-4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기관·시책 등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특산품 등에 대한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지급관리대장을 구비하지 않고 있고, 아래 [표1]과 같이 관리대장에 기재되어야 할 총 8건이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특산품 등 구매내역 중 관리대장 미기재 내역

- 이하 생략 -

2. 지출예산 과목 부적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I-4-1-나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3조 [별표1] 제6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명절선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명절선물 6건에 대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표2] 명절선물 집행 내역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물품은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지급내역 등을 관리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산림환경연구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편성된 공공운영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및 차량·선박 유지를 위한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고,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 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음수대 설치, 보안 가로등 설치 등 총 3건을 집행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는 시설비 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다.

[표] 공공운영비 부적정 집행 현황

- 이하 생략 -

조치할 사항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